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일반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교목실장, 총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1, 2016. 5. 4., 2019. 8. 1., 2021. 3. 1., 2022. 2. 8.)

②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5. 1, 2019. 8. 1., 2021. 3. 1.)

제5조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직원의 신규채용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 시행당시의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제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